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군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(안 제2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「전자정부법」의 취지에 따라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, 군 사법기관 상호 간의 행정업무 수행 시 및 군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군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.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, 군 사법기관 상호 간의 행정업무 수행 시 및 군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군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군 형사사법업무의 전산화 및 대국민서비스 효율성 증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